의안번호	제 600 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11월 27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600

제출연월일: 2020년 11월 27일 제 출 자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방사광가속기추진 지원단 신설 사항과 자율신설기구 운영 관련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구 신설: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(안 제9조의3)
 - 존속기한 : 2022. 12. 31.까지 (경제부지사 소관)
-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분장사무 신설 (안 제9조의3)
 -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워에 관한 사항
 -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 -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
- 자율신설기구 운영 관련 성과평가 조항 신설 (안 제63조)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
- 소방본부 분장사무 중 현행 업무에 맞게 자구 조정 (안 제14조)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**관계법령 발췌 :**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"바이오산업국"을 "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, 바이오산업국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바이오산업국"을 "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, 바이오산업국"으로 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)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
- 2.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4.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

제14조제7호 중 "도민안전체험관"을 "안전체험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"소방항공구조대"를 "소방항공대"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"소방 종합상황실"을 "119종합상황실"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"광역119특수구조다"을 "119특수구조단"으로 한다.

제6장(제6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

- 제63조(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) ①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달성 여부, 행정수요 지속 여부,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- 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경제환경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 겨ᅰ칪겨	기계투사구 기계투사구	경제통상국, 신성장산업국,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,
경세환경 보 교	'경세등'경독 (겨체기어교)	경제통상국, 신성장산업국,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, 바이오산업국, 환경산림국, 보건환경연구원, 경제자유구역청
	(つ게/ 百千) 	경제자유구역청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4조(부지사) ①・② (생 략) 제4조(부지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경제통상국, 신성장산업국, 1. -----바이오산업국, 균형건설국, 환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, 바 경산림국 소관 업무, 공항관련 이오산업국-----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 서 업무에 관한 사항 2. · 3. (생략) 2. · 3. (현행과 같음) 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① 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① -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기획관리실, 재난안전실, 행 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신성장산업국, 바이오산업국, ----- 방사광가속기추진 농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균형 지원단, 바이오산업국-----건설국 및 환경산림국을 둔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9조의3(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 단)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

- 제14조(소방본부) 소방본부장은 제14조(소방본부) ------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- 1. ~ 6. (생략)
 - 7.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7. 안전체험관 -----사항
 - 8. 소방항공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
 - 9. 소방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
 - 10. (생략)
 - 11.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- 2.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4.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8. 소방항공대 -----
- 9. 119종합상황실 -----
- 10. (현행과 같음)
- 11. 119특수구조단 -----

제6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제63조(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) ①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평 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달성 여 부, 행정수요 지속 여부, 기능수

<u>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</u> <u>여야 한다.</u>

②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 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 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제9조의2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시·도는 별표 1에 따른 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시·도는 제1항에 따라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·국·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·삭 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·국·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 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,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 -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